

Relaxation on Contributions to the Employment Social Security Programme during the COVID-19 pandemic ^{P1}

Tax rate reduction for public companies – reporting requirements ^{P3}

COVID-19 팬더믹 기간 동안 고용관련 사회보장제도 납부의무의 완화

정부는 COVID-19 팬더믹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용관련 사회보장제도의 납부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령 No.49 Year 2020 (GR-49)를 2020년 9월 1일에 발표하였습니다.

GR-49는 납부 의무 완화 기간을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, 하기의 완화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:

- a. 다음의 사회보장제도의 납부 기한의 연장;
 - 산재보험 (Jaminan Kecelakaan Kerja/JKK)
 - 사망보험 (Jaminan Kematian/JKM)
 - 노령연금 (Jaminan hari Tua/JHT)
 - 연금보험 (Jaminan Pensiun/JP)
- a. 산재보험(JKK) 및 사망보험(JKM) 납부금의 감소;
- b. 연금보험(JP) 납부금의 부분 납부 유예 혜택.

납부 기한의 연장

위에서 언급한 산재보험, 사망보험, 노령연금 및 연금보험은 기존 규정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, GR-49에 따라 익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. 익월 30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납부 금액은 30일 이전의 영업일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.

산재보험(JKK) 및 사망보험(JKM)의 납부금의 감소

GR-49 는 산재보험 및 사망보험의 납부금에 대하여 99%의 감액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혜택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산재보험 및 사망보험의 정상 납부 금액의 1%만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고용주가 기존에 산재보험금으로 급여의 0.24%, 사망보험금으로 급여의 0.3%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GR-49 의 혜택을 적용하면, 이를 각각 0.0024% 및 0.003%만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적용 요건

동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고용주 및 근로자가 2020 년 8 월 이전에 등록이 되었어야 하며, 2020 년 7 월까지 사회보장제도 납부금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.
- 근로자가 2020 년 7 월 이후에 사회보장제도에 등록 된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보험과 사망보험의 첫 2 개월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세 번째 달부터 동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(세번째 달이 동 혜택기간 종료후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).

적용 매커니즘

동 혜택은 사회보장공단(*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/BPJS Ketenagakerjaan*)에서 참여자 보고 정보 시스템(*Sistem Informasi Pelaporan Peserta/SIPP*)을 통하여 직접 제공하며 사회보장공단에서 관리합니다(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).

2020 년 8 월 이후 납부금으로 인하여 초과납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납부금은 다음 기간에서 납부금이 공제됩니다.

연금보험(JP) 납부금의 부분 납부 유예 혜택

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납부금은 기준금액의 3%이며, 고용주가 2% 및 근로자가 1%를 부담합니다. 총 3%의 납부금은 고용주가 사회보장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
GR-49 에 따르면, 고용주는 GR-49 의 적용 기간 동안 총 3%의 납부금의 99%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즉 1%만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. 유예된 99%에 해당하는 납부금은 2021 년 5 월 15 일 이후부터 전액 납부하거나 할부로 납부하여야 하며, 2022 년 4 월 15 일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.

적용 요건

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b. COVID-19 으로 인하여 주요 사업 활동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, 그 결과 2020 년 2 월부터 월별보고서 기준으로 매출액이 30% 이상 감소한 회사(경영진이 이에 대한 statement letter 를 제출하여야 함);
- c. 고용주는 근로자를 2020 년 8 월 이전에 사회보장제도에 등록하였어야 하며 2020 년 7 월까지 연금보험 납부금을 모두 납부하였어야 합니다. 근로자가 2020 년 7 월 이후에 등록이 된 경우, 고용주는 동 혜택을 즉시 적용하여 연금보험 납부금의 1%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소규모 및 영세기업인 경우에는 상기 조건 중 (b)조건만을 충족하면 동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적용 매커니즘

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, 고용주는 반드시 사회보장공단에 연금저축 납부금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사회보장공단은 제출된 신청서를 3 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 또는 기각 여부를 검토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1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 신청 및 통보 절차는 수기 또는 전자(사회보장공단 웹사이트 통해서)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소규모 및 영세기업의 경우, 고용주는 사회보장공단에 통보만으로 동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사회보장공단은 기업의 통보 이후 1 일 이내에 연금저축 납부금의 유예 효력이 발생함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
연금저축 등록자가 동 혜택기간 내에 연금저축의 총액을 지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예된 납부금은 반드시 연금저축 금액 수령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.

납부금의 지연 납부에 대하여는 매월 0.5%의 패널티가 부과됩니다. 그러나 GR-49 에 따른 유예된 납부금은 지정 기간 내에 모두 납부되는 경우에는 기존 지연 납부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상장회사의 법인세 감면혜택 – 보고의무 업데이트

상장회사가 정부령 No.30 Year 2020 (GR-30)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세율에서 추가로 3%의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즉, 2020 년-2021 년은 19% 및 2022 년 이후부터는 17%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GR-30 에 대하여는 텍스플래쉬 27 번([TaxFlash No.27/2020](#)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GR-30 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재무부는 동 보고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보고양식과 제출 정보를 규정하고자 재무부령 No.123/PMK.03/2020

(PMK-123)을 2020년 9월 2일에 발표하였습니다. 동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:

- a. 자본시장법에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의 월별보고 또는 증권관리국(Biro Administrasi Efek)에서 작성된 명부 또는 PMK-123의 첨부 C([Attachment C](#))에 따라 상장회사가 직접 작성한 명부;
- b. PMK-123의 첨부 A([Attachment A](#))에 따라 작성된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보고서.

납세의무자는 연간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상기의 두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금융감독당국(Otoritas Jasa Keuangan/OJK)의 감사위원장은 동 혜택의 적용의 검증 목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상장사의 목록을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월의 익월 말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(*)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(KBD)로 연락부탁드립니다:

정태훈 회계사

E: taehun.jung@pwc.com

박인혁 회계사

E: inhyuk.park@pwc.com

박재성 회계사

E: jay.y.park@pwc.com

Your PwC Indonesia contacts:

Abdullah Azis
abdullah.azis@pwc.com

Gerardus Mahendra
gerardus.mahendra@pwc.com

Peter Hohtoulas
peter.hohtoulas@pwc.com

Adi Poernomo
adi.poernomo@pwc.com

Hasan Chandra
hasan.chandra@pwc.com

Raemon Utama
raemon.utama@pwc.com

Adi Pratikto
adi.pratikto@pwc.com

Hendra Lie
hendra.lie@pwc.com

Runi Tusita
runi.tusita@pwc.com

Alexander Lukito
alexander.lukito@pwc.com

Hisni Jesica
hisni.jesica@pwc.com

Ryuji Sugawara
ryuji.sugawara@pwc.com

Ali Widodo
ali.widodo@pwc.com

Hyang Augustiana
hyang.augustiana@pwc.com

Soeryo Adjie
soeryo.adjie@pwc.com

Amit Sharma
amit.xz.sharma@pwc.com

Kianwei Chong
kianwei.chong@pwc.com

Sujadi Lee
sujadi.lee@pwc.com

Andrias Hendrik
andrias.hendrik@pwc.com

Laksmi Djuwita
laksmi.djuwita@pwc.com

Sutrisno Ali
sutrisno.ali@pwc.com

Anton Manik
anton.a.manik@pwc.com

Lukman Budiman
lukman.budiman@pwc.com

Suyanti Halim
suyanti.halim@pwc.com

Antonius Sanyojaya
antonius.sanyojaya@pwc.com

Mardianto
mardianto.mardianto@pwc.com

Tim Watson
tim.robert.watson@pwc.com

Ay Tjhing Phan
ay.tjhing.phan@pwc.com

Margie Margaret
margie.margaret@pwc.com

Tjen She Siung
tjen.she.siung@pwc.com

Brian Arnold
brian.arnold@pwc.com

Oki Octabiyanto
oki.octabiyanto@pwc.com

Turino Suyatman
turino.suyatman@pwc.com

Dexter Pagayonan
dexter.pagayonan@pwc.com

Omar Abdulkadir
omar.abdulkadir@pwc.com

Yessy Anggraini
yessy.anggraini@pwc.com

Enna Budiman
enna.budiman@pwc.com

Otto Sumaryoto
otto.sumaryoto@pwc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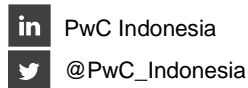
Yuliana Kurniadjaja
yuliana.kurniadjaja@pwc.com

Gadis Nurhidayah
gadis.nurhidayah@pwc.com

Parluhutan Simbolon
parluhutan.simbolon@pwc.com

Yunita Wahadaniah
yunita.wahadaniah@pwc.com

www.pwc.com/id

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contact.us@id.pwc.com.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20 PT Prima Wahana Carak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